



대구광역시 달성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736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: 2025. 9. 17. 
제출자: 달성군주 

1. 제안이유

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 제51조의2 납세자보호관의 업무·권한·자격 등 개정 (2025. 1. 1. 시행)으로 추가된 선정 대리인 운영에 관한 사항 반영한 조문 정비

2. 주요내용

- 가. 제6조 및 제7조 납세자보호관의 업무, 권한 조문 수정
- 나. “제10장 선정 대리인 운영”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신설

3. 조례안 : 따로 붙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세기본법」 제93조의2,
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 제51조의2, 제62조의2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예산 필요 없음
- 다. 기타
 - (1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 참조
 - (2) 입법예고(2025. 9. 10. ~ 9. 30.) 결과 : 의견없음
 - (3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 - (4) 성별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
(5) 부패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
(6) 부서합의 : 해당사항 없음

(7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대구광역시 달성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영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

제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영 제51조의2제2항에 따른 권한

제37조를 제41조로 하고, 제41조(중전의 제37조) 앞에 제10장(제37조부터 제40조까지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장 선정 대리인 운영

제37조 (소유 재산의 평가 방법)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평가는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(이하 “선정 대리인”이라 한다) 선정을 신청하는 당시의 가액으로 「지방세법」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.

제38조(선정 대리인 선정 신청·통지 등) ① 군수는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(이하 “이의신청 등”이라 한다)이 접수된 경우 그 세액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건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(이하 “이의신청인 등”이라 한다)에게 선정 대리인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.

② 이의신청인 등이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 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때는 규칙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대구광역시장의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 대리인을 선정하고, 법 제93조의2제2항에 따라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 등과 선정 대리인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선정 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 대구광역시장에게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.

⑤ 군수는 선정 대리인 선정 후 이의신청인 등이 선정 대리인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.

제39조(선정 대리인 선정 사건 관리) ① 군수는 선정 대리인을 선정한 때에는 이의신청인 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즉시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고,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선정 대리인을 선정한 때에는 이의신청 등 일자·납세자·선정 대리인 선정 일자·결정 내용 등을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

제40조(선정 대리인의 의무·우대 등) ① 선정 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 만료 전에 선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.

② 선정 대리인은 불복 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.

③ 군수는 선정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.

1. 「변호사법」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「세무사법」 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

2.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3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

④ 군수는 선정 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하여 불복업무를 대리하고 있음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 대리인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 (이하 “이의신청 등”이라 한다) 이 접수 된 경우 그 세액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건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(이하 “이의신청인 등”이라 한다)에게 선정 대리인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.

② 이의신청인 등이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 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때는 규칙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 제93조의2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대구광역시장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 대리인을 선정하고, 법 제93조의2제2항에 따라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 등과 선정 대리인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선정 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 대구광역시장에게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.

⑤ 군수는 선정 대리인 선정 후

<신 설>

이의신청인 등이 선정 대리인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.

제39조(선정 대리인 선정 사건 관리) ① 군수는 선정 대리인을 선정할 때에는 이의신청인 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즉시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고,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선정 대리인을 선정할 때에는 이의신청 등 일자·납세자·선정 대리인 선정 일자·결정 내용 등을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제40조(선정 대리인의 의무·우대 등) ① 선정 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 만료 전에 선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.

② 선정 대리인은 불복 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.

③ 군수는 선정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하거나 각종

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.

1. 「변호사법」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「세무사법」 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

2.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3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

④ 군수는 선정 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하여 불복업무를 대리하고 있음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 대리인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37조 (생략)

제41조 (현행 제37조와 같음)

관 계 법 령

□ 지방세기본법

제93조의2(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) 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(이하 이 조에서 “이의신청인등”이라 한다)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, 세무사 또는 「세무사법」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.

1. 이의신청인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
 - 가. 개인인 경우: 「소득세법」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의 가액이 각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
 - 나. 법인(「법인세법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 법인을 말하며, 제153조에 따라 준용되는 「국세기본법」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)인 경우: 「법인세법」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과 자산이 각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
 2. 삭제<2024. 12. 31.>
 3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액·상습 체납자 등이 아닐 것
 4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청구 또는 신청일 것
 5. 담배소비세,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청구 또는 신청일 것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대리인을 선정하고,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등과 대리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의 권한에 관하여는제93조 제4항을 준용한다.
- ④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의 선정, 관리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지방세기본법 시행령

제51조의2(납세자보호관의 업무·권한·자격 등) ① 법 제77조 제2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”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.

1.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, 세무상담 등에 관한 사항
 2. 세무조사·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
 3. 납세자권리현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
 4.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
 5. **법 제93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**
 6.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
- ② 납세자보호관이 제1항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위법·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
 2. 위법·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요구 및 중지 요구
 - 2의2.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법·부당한 행위를 한 세무공무원 교체 명령 요구 및 징계 요구
 3. 위법·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요구
 4.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
- ③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조세·법률·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그 직급 또는 경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 추진실적을 법 제149조에 따른 통계자료의 공개시기 및 방법에 준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.
- ⑤ 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 기간 및 방법, 그 밖의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제62조의2(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) ① 법 제93조의2 제1항에 따라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1.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(이하 이 조에서 “이의신청인등”이라 한다)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
2. 이의신청인등이 법 제93조의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
3.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의신청인등의 법 제93조의2 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

② 법 제93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”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.

1. 종합소득금액의 경우: 5천만원. 이 경우 「소득세법」 제70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전에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전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대상으로 하고, 그 신고기한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대상으로 한다.
2. 소유 재산의 가액의 경우: 다음 각 목에 따른 재산의 평가 가액 합계액이 5억원. 다만,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.

가. 「지방세법」 제6조 제2호에 따른 부동산

나. 「지방세법」 제6조 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회원권

다. 「지방세법 시행령」 제123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

③ 법 제93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”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. 이 경우 「법인세법」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전에 지방자치단체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전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과 해당 사업연도말의 자산

가액을 대상으로 하고, 해당 신고기한 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과 해당 사업연도말 자산가액을 대상으로 한다.

1. 매출액의 경우: 3억원
 2. 자산가액의 경우: 5억원
- ④ 법 제93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액·상습채납자 등”이란 「지방세징수법」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를 말한다.
- ⑤ 법 제93조의2 제1항 제4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”이란 2천만원을 말한다.
- ⑥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하고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가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.
-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유 재산의 평가 방법, 대리인의 임기·위촉, 대리인 선정을 위한 신청 방법·절차 등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변호사법

제90조(징계의 종류)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다음 다섯 종류로 한다.

1. 영구제명
2. 제명
3. 3년 이하의 정직
4.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
5. 견책

제91조(징계 사유) ① 제90조 제1호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변호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(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) 그 형이 확정된 경우(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)
2. 이 법에 따라 2회 이상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제2항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 자로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② 제90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이 법을 위반한 경우
2. 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
3.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

□ 세무사법

제17조(징계)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세무

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2항에서 정하는 징계를 명할 수 있다.

1. 이 법을 위반한 경우
 2. 한국세무사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
- ② 세무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등록취소
 2. 2년 이내의 직무정지
 3.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
 4. 견책(譴責)
-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 요구된 세무사가 제7조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6조에 따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.
- ④ 해당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계를 할 수 없다.
-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사가 제2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.
-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징계를 명하는 경우 징계사유, 징계내용, 공직퇴임 세무사인지 여부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징계결과를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
-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세무사에 대한 징계를 명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세무사, 소속협회 및 국세청장에게 각각 통보하고 그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.
- ⑧ 소속협회는 제7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해당 협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.
- ⑨ 세무사징계위원회의 구성·운영, 제7항에 따른 통보·공고 및 제8항에 따른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